

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24. 7. 10.> 팩토리온(www.factoryon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일(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)	
신청인	회사명 (전화번호: /팩스번호:)	(법인등록번호:)	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		
	대표자 주소(법인 소재지)			
공장 현황	공장 소재지			
	공장설립 승인번호	발행일		
	업종(분류번호)	기준공장 면적률(%)		
	공장가동 개시예정일	공장 준공일(건축물 사용승인일)		
	규모	공장 부지 면적(m ²)	제조시설 면적(m ²)	부대시설 면적(m ²)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의 완료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·관리기관 귀하

첨부서류	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(신청서와 첨부서류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의 내용

제조시설 명세(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)

제조시설명	용량	수량	배출오염물질		방지시설
			종류	배출량	

처 리 절 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